

NARS **현안분석**NARS Current Issues and Analysis

해외 영 케어러(young carer) 지원 제도와 시사점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및 고립 예방을 위한 과제

허민숙

01 | 서론

02 11. 해외 영 케어러 연구

09 Ⅲ. 해외 영 케어러 지원 제도

16 Ⅳ. 시사점 및 과제

요 약

- □ 영 케어러란 가족구성원을 간병하고 돌보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 년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에 대한 법적·정책적 인지가 없음
 - 1990년대에 영 케어러의 존재를 인지하고, 지원을 위한 법률 근거 및 각종 제도를 마련한 국가가 있는 한편, 우리나라는 국 제 비교연구에서 '무반응 국가'로 분류되어 있음
- □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간병살인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의 가족간호·간병은 영 케어러의 신체적·정신적 부담과 고통을 증가시킴은 물론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약함으로써 미래의 고용 및 자립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짐
- □ 해외 국가들의 영 케어러 지원은 이들이 또래 집단과 같은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둠
 - 영 케어러의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등에 신속히
 연계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설계·활용하고 있음
 -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영 케어러를 지원하고자 함
-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실태조사 및 지원 서비스에 관한 법률 근거 를 마련하고 기존의 위기지원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영국 등 경험이 축적된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영 케어러들의 구호 요청 창구를 확대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며,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Ⅰ. 서론

'영 케어러(Young Carer)'란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가족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를 따뜻하게 보살피고 위로하는 것은 가족의 역할이자, 개인에게 있어서는 친밀성에 기반한 중요한 안전망이다. 그러나 조손가정에서 고령의 조부모를 돌보고 보살피는 아동·청소년, 병든 부모에 대한 돌봄책임 뿐 아니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청소년, 장애부모의 손발이 되어 주는 아동·청소년들이 이러한 돌봄부담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면, 이는 가족에 대한 애정과 보살핌을 넘어서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간병살인 사건' ¹⁾발생을 계기로 영 케어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영 케어러에 대한 법적·정책적 인지는 전무한 실정이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놓인 효자 또는 효녀로 호명되고, 칭찬 또는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며, 별다른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해왔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차 가늠되고 있지 못하다.

가족을 돌보는 어린 자녀들을 기특한 시선으로만 바라보기에는 영 케어러들이 처한 삶의 여건은 그들의 입장에서 너무도 버거운 현실이다. 특히 영 케어러들의 돌봄역할 수행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일시적인 활동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질병 및 장애를 가진 부모에 대한 것이라면, 영 케어러의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삶에도 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성장기 청소년의 돌봄부담은 사회적 부담과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영 케어러에 대한 인식 및 정책 대응에 대한 비교연구는 국가별 수준을 1~7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법제도적 정비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서 영 케어러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마련된 수준으로 구분해 볼 때, 1단계(통합적/지속가능 정책의 완비)에 속하는 국가는 없으며, 영국이 2단계 (선진수준) 국가로 분류되었다. 우리나라는 7단계 무반응 국가 그룹에 속한다.²⁾

이 글에서는 해외 영 케어러 현황, 근거 법률, 지원 정책 및 제도, 민간단체 활동 등의 탐색을 통해 우리 곁에 존재해 왔으나, 사회적 지원 대상으로 조명 받지 못하고 있는 '영 케어러' 실태조사의 필요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제도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1999}년생 20대 청년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병원비 부담으로 집에서 홀로 돌보다 생활고와 간병을 감당하지 못하여 아버지를 의도적으로 방치·사망케 한 점이 인정되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백경열, 「22세 청년의 '간병살인' 비극…우리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경향신문』 2021.11.09.

^{2) 3}단계 중간급에 속하는 국가들로는 호주,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가 있고, 준비단계인 4단계에 속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독일, 뉴질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이다. 5단계인 인식·정책 신생국에는 벨기에, 아일랜드, 핀란드, 프랑스, 미국이 거론되고 있고, 6단계 인식초기 단계 국가에는 방글라데시, 그리스, 인도, 일본, 네팔, 폴란드, 슬로베니아, 아랍 에미레이트가 있다. Leu, Agnes et al., "The 2021 cross-national and comparative classification of in-country awareness and policy responses of 'young carers'", *Journal of Youth Studies*, 2022, pp.5-6.

Ⅱ. 해외 영 케어러 연구

1. 영 케어러 정의 및 규모

가. 정의

영 케어러는 부모, 형제 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무보수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고, 여전히 가시화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숨겨진 집단(hidden army)'으로 호명되기도 한다.³⁾ 가장 일선에서 고군분투하지만 쉽게 인지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잊혀진 최전선(forgotten front line)'에 비유되기도 한다.⁴⁾ 이들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영국에서의 일이다.⁵⁾ 이후 1993년 영국에서 출간 된 책(Children Who Cares: Inside the World of Young Cares)을 통해 가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⁶⁾

'영 케어러'에 대한 일관되고 공식적인 정의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나, 영 케어러에 대한 가장 많은 연구가 축적되고 이들을 특정한 법률을 제정한 국가인 영국이 규준점이 되고 있다. 영국의 「아동 및 가족법 2014」(The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에서는 가족 내 성인 및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를 영 케어러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건사회서 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는 장애, 질병, 정신건강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구성원이나 친척을 돌보는 18세 미만의 자를 영 케어러로 정의한다. 8 18~24세의 후기청소년은 영 어덜트 케어러(Young Adult Carer: 이하 청년돌봄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은 「돌봄법」(Care Act 2014) 에서 규정한다.

³⁾ Leu, Agnes et al., "The 2021 cross-national and comparative classification of in-country awareness and policy responses to 'young cares', *Journal of Youth Studies*, 2022.

⁴⁾ Wayman, Sheila, The vital role young carers play on the 'forgotten front line'(최종 검색일: Feb. 8, 2022), The Irish Times (2021.11.30.), (https://www.irishtimes.com/life-and-style/health-family/parenting/the-vital-role-young-carers -play-on-the-forgotten-front-line-1.4735381)

⁵⁾ Saul Becker et al., 'Young carers in the UK: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Research, Policy and Planning, 8(2), 2000.

⁶⁾ Joseph, Stephen et al., "Young Carers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An Overview and Critical Perspective on Possible Future Directions", *Adolescent Research Review*, 5, 2020, p.77.

⁷⁾ UK Legislation,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 (최종 검색일: Feb. 8, 2022),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4/6/section/96/enacted〉

⁸⁾ NHS, *Being a young carer: your rights*(최종 검색일: Feb. 8, 2022), 〈https://www.nhs.uk/conditions/social-care-and-support-quide/support-and-benefits-for-carers/being-a-young-carer-your-rights/〉

⁹⁾ UK Legislation, Care Act 2014(최종 검색일: Feb. 8, 2022),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4/23/contents/enacted)

영 케어러들의 돌봄수고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장보기, 세탁, 요리, 청소, 공과금 납부 등의 가사활동, 투약보조, 드레싱 교환, 이동 보조 등의 간병활동, 목욕시키기, 용변처리 등의 사적활동, 환자에 대한 감정적·정서적 돌봄 제공은 물론, 어린 동생 돌보기와 등·하원 시키기 등의 활동이 추가되기도 한다. 10)

나. 영 케어러 규모

영 케어러가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조사(prevalence study)는 국가별로 특정 연령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다. 국가별로 청소년 조사대상의 연령 범주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략 청소년 인구의 5~8%가 영 케어러인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의 11~18세 청소년의 8%, 뉴질랜드 15~24세 청소년의 8%, 스웨덴 14~16세 청소년의 7%, 이탈리아 15~24세 청소년의 7.2%, 스위스 10~15세 청소년의 7.9%, 네덜란드 13~17세 청소년의 6%, 독일 12~17세 청소년의 5%가 영 케어러로 조사되었다. 이를 우리나라의 11~18세 청소년 인구 368만 4,531명¹¹⁾에 단순 대입하면, 우리나라에도 약 18만 4천 명~ 29만 5천 명의 영 케어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추정치가 산출된다.

표 1	국가별 '	영 케어러	유병률	조사(preval	lence	study)	
-----	-------	-------	-----	-----	--------	-------	--------	--

국가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조사연령	11~18세	15~24세	14~16세	15~24세	10~15세	13~17세	12~17세
해당 연령 인구대비 비율	8%	8%	7%	7.2%	7.9%	6%	5%

※자료: Leu, Agnes et al., "The 2021 cross-national and comparative classification of in-country awareness and policy responses of 'young carers'", *Journal of Youth Studies*, 2022.

Leu, Agnes et al., "Counting Young Carers in Switzerland – A Study of Prevalence", *Children & Society*, 2018.에서 재인용.

International Alliance of Carer Organization, Global State of Caring - New Zealand, 2021.

영국 하원도서관(House of Commons Library)은 2021년도 발간물 '비공식 간병인 (Informal Carers)' ¹²⁾에서 영 케어러의 규모를 2011년도 인구센서스 자료에 기반하여 파악하고 24세 이하의 청소년 49만 1천 명을 영 케어러로 추산하였다. 영국 자선단체인 The Children's Society는 영국 내 5~17세 영 케어러가 8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¹³⁾

¹⁰⁾ The Children's Society, Supporting Young Carers and Their Families: An Introductory guide for professionals, 2016, p.9.

¹¹⁾ 통계청, 「인구총조사-연령 및 성별 인구」(최종 검색일: 2022.2.8.)

^{\(\}text{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3&conn_path=I3}\)

¹²⁾ Foley, Niamh et al., Informal Carers, House of Commons Library, 2021.

¹³⁾ The Children's Soceity, Supporting young carers(최종 검색일: Feb. 14, 2022), 〈https://www.childrenssociety.org.uk/what-we-do/our-work/supporting-young-carers〉

2. 국가별 실태

가. 가족 돌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특히 가족에 대한 돌봄은 돌봄대상인 가족 구성원 뿐 아니라 돌봄제 공자에게도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돌봄책임과 그 역할 수행이 공감능력, 문제해결 능력, 위기조절 능력 등을 향상시키고 탄력회복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되기 때문이다. 14) 가족을 돌보는 영 케어러들이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인정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관련 연구자들은 돌봄책임이 매우 어린 시절부터 부여되거나 장기간 지속될 때, 돌봄제공자가 받게 되는 부정적 여파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15)

영 케어러를 부모에 대한 효성 또는 격려해야 할 가족애로 보는 관점에서 그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만성적인 질병 내지는 장애를 가진 가족에 대해 장기간의 돌봄노동을 제공하고 있다는 현실, 이것이 영 케어러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우려 때문이다. 어린시절 시작되어 청소년기를 거쳐 장기화되는 돌봄수고는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한다. 유년시절 그리고 성장시기의 돌봄역할 수행은 이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 우선, 학령기 연령의 영 케어러들은 지속적인 돌봄활동으로 인해 학교에 결석하는 비율이 높다. 캐나다의 연구에서는 영 케어러들의 학교 결석율이 10.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7 대학에 재학 중인 영국 가족 돌봄 청년들의 56%가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업 수행에 지장을 받으며, 학업을 끝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18 잦은 결석, 낮은 학업 성취도와 같이 가족 돌봄 수행에 의한 학습기회의 박탈과 제약은 미래의 고용상태 및 자립능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19

영 케어러들이 견뎌내고 있는 정서적인 시달림이 정신건강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주목 해야 할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다. 학교에 재학 중인 영국 14~25세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대 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들의 38%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²⁰⁾ 이들의 범위를 대학생으로 좁혔을 때,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로 증가하였다. ²¹⁾

¹⁴⁾ Haugland, Bents, et al., "The Burden of Care: A National Survey on the Prevalenc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Health Problems Among Young Adult Carrers Attending Higher Education in Norway", *Frontiers in Psychology*, 10, 2020.

¹⁵⁾ Foley, Niamh et al., Informal Carers, House of Commons Library, 2021, p.39.

¹⁶⁾ Joseph, Stephen et al., "Young Carers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An Overview and Critical Perspective on Possible Future Directions", *Adolescent Research Review*, 5, 2020, p.78.

¹⁷⁾ Stamatopoulos, Vivian, "The young carer penalty: Exploring the costs of caregiving among a sample of Canadian youth", *Child & Youth Services*, 39(2–3), 2018.

¹⁸⁾ Sempik, and Becker, Young adult carers at College and University. London: Carers Trust, 2014.

¹⁹⁾ Kaiser, S., & Schulze, G. C., "Between inclusion and participation: Young carers who are absent from school", *Journal of Cognitive Education and Psychology*, 14(3), 2015.

²⁰⁾ Sempik, and Becker, 앞의 글.

나. 영국

2018년 기준 영국 잉글랜드 지역에서만 16만 6,363명의 영 케어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²²⁾ 이들의 연령 비율을 살펴보면 10~14세 46%, 15~17세 41%, 10세 미만 13%로 10세 미만 아동의 가족 돌봄 비율도 작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들의 55%가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25%는 형제자매를 돌보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영 케어러 12명 중의 1명은 주당 15시간 이상 가족을 돌보고 있으며, 21명 중 1명은 돌봄으로 인해 결석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영 케어러의 가족은 연간 수입이 £5,000(약 811만 원) 이하로 빈곤한 편이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 가족 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사실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주당 50시간 이상을 가족 돌봄에 할애하고 있는 영 케어러들은 자신의 건강마저 '좋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다. 또한 지난주 슬픈 감정을 느꼈다고 답한 비율은 10명 중 4명, 외로움을 느꼈다고 답한 비율은 4명 중 1명, 2명 중 1명은 지난주 분노감을 느꼈었다고 답변하여 이들의 심리 상태도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 돌봄의 임무는 영 케어러들의 학교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영 케어러들은 괴롭힘이나 따돌림의 대상이 될 우려가 일반 학생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한 조사에서 영 케어러의 68%가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들은 가족의 질병 내지는 장애가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돌봄책임과 괴롭힘은 이들의 잦은 결석의 이유가 된다. 학교생활에 충실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이들이 무업상태(NEET)²³⁾에 있는 비율은 또래 집단에 비해 두 배가량 높았다.²⁴⁾

한편, 영국에는 최소 37만 6천 명의 청년돌봄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학업 또는 근로에 매진하는 시기의 돌봄노동은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교육, 근로, 돌봄노동의 중첩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이들 중 45%가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년돌봄자의 29%가 돌봄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또래 집단 학업중단률의 4배에 이르는 수치다. 25)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는 이들의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 케어러의 40%, 청년돌봄자의 59%가 코로나19 이후로 정신건강이 더 나빠졌다고 답변하였다. 영 케어러리의 67%, 청년돌봄자의 78%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졌다고 답변하였으며, 영 케어러

²¹⁾ 위의 글.

²²⁾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Meeting the Health and Wellbeing Needs of Young Carers, 2018, p.6.

²³⁾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을 말한다.

²⁴⁾ Carers Trust, Protecting Young Carers from Bullying: A Guide for Schools, Community Groups and Policy Makers, 2016.

²⁵⁾ Carers Trust, About Young Adult Carers(최종 검색일: Feb. 12, 2022),

[\]https://carers.org/about-caring/about-young-adult-carers>

의 66%, 청년돌봄자의 74%는 스트레스가 더 심해졌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들의 69%는 고립감을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로 돌봄부담 시간은 증가한 것으로조사되었다. 영 케어러의 11%, 청년돌봄자의 19.7%가 주당 가족 돌봄 시간이 30시간 이상 증가하였다고 답하였다. ²⁶⁾



│그림 1│ 코로나19가 영 케어러와 청년돌봄자의 정신건강 및 돌봄시간 증가에 미친 영향

※ 자료: Carers Trust, Steep decline in mental health of young carers and young adult carers following Coronavirus outbreak (최종 검색일:2022.2.11.), (https://carers.org/news-and-media/news/post/51-steep-decline-in-mental-health-of-young-carers-and-young-adult-carers-following-coronavirus-outbreak)

다. 호주

호주에서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친척 그리고 친구를 돌보는 25세 이하의 영 케어리가 23만 5천여 명에 이를 것이라 추산하고 있다. 27) 2020년 간병인(Carer)조사 28)에서 25세 이하 영 케어리의 상황을 일부 엿볼 수 있다. 영 케어리의 성별을 보면, 여성청소년인 경우가 76.9%, 남성청소년인 경우가 19.4%로 가족 돌봄 책임이 주로 여성청소년에게 부과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를 돌보고 있는 경우가 75.4%로 가장 많았고,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는 13.8%로 조사되었다. 이들 중 40%가 10년 또는 그 이상 가족을 돌봐왔다고 응답하였으며, 주당 평균 50시간을 돌봄에 할애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들이 돌보는 가족이 정신질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49%에 달하였고, 만성질환 및 장애가족을 돌보고 있다는 응답은 28.2%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인 안녕(well-being) 수준에 대해 영 케어리의 58.1%가 '그렇다'고 응

²⁶⁾ Carers Trust, Steep decline in mental health of young carers and young adult carers following Coronavirus outbreak(최종 검색일: Feb. 11, 2022), https://carers.org/news-and-media/news/post/51-steep-decline-in-mental-health-of-young-carers-and-young-adult-carers-following-coronavirus-outbreak

²⁷⁾ Cares Australia, *Young Carers*(최종 검색일: Feb. 8, 2022), 〈https://www.carersaustralia.com.au/about-carers/young-carers/〉 28) Carers NSW Australia, *2020 National Carer Survey: Young Carers*, 2020.

답하였는데, 이는 일반인의 답변 비율 75%와 비교해 볼 때 명확히 낮은 수치이다. '사회적 고립 감'에 대한 조사에서 영 케어러들의 73.5%가 고립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73.8%는 정신적인 괴로움을 호소하였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 유추되는 대목도 있다. 응답자의 25.7%가 전화요금과 공과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했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럼에도 이들이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온라인 포럼 등에 참석하여 지원을 받았다는 답변 비율은 21%, 전화상담 및 대면 서비스를 지원 받았다는 답변은 16%에 그치고 있다.



| 그림 2 | 호주 영 케어러의 사회적 고립감, 경제적 곤란, 서비스 수혜 비율

※ 자료: Carers NSW Australia, 2020 National Carer Survey: Young Carers, 2020.

라. 노르웨이

2018년 18~25세 연령의 재학생 4만 205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조사에서 조사대상의 5.5% 가 가족 등에 대한 돌봄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²⁹⁾ 동거가족을 돌보는 경우는 1.3%였고, 4.2%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족 등을 돌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이 돌보는 사람은 이혼한 부모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돌봄책임은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돌봄책임이 없다고 응답한 여학생의 30.1%가 불안과 우울 증상이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평일 2시간 이상 가족 등에 대한 돌봄책임이 있는 여학생의 경우에는 56.4%가 불안과 우울 증상을 호소하였다. 불면증에 대한 응답률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돌봄책임이 있는 여학생 중 평일 2시간 이상 가족 등을 돌보고 있는 경우 53.7%가 불면증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돌봄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32.2%가 불면증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돌봄책임은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하락시키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되었다. 돌봄책임이 없다고 응답한 여학생의 39.6%가 삶이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평일 2시간 이상 가족 등을 돌보고 있는 여학생의 22.1%만이 삶이 만족스

²⁹⁾ Haugland, Bents, et al., "The Burden of Care: A National Survey on the Prevalenc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Health Problems Among Young Adult Carrers Attending Higher Education in Norway", Frontiers in Psychology, 10, 2020.

럽다고 답하였다. 돌봄책임이 없는 남학생의 43.2%가 삶이 만족스럽다고 답하였고, 이에 비해 주중 2시간 이상의 돌봄책임이 있는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31.9%로 비교군에 비해 낮았다.



| 그림 3 | 노르웨이 영 케어러의 정신건강, 수면의 질,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답변

※ 자료: Haugland, Bents, et al., "The Burden of Care: A National Survey on the Prevalenc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Health Problems Among Young Adult Carrers Attending Higher Education in Norway", Frontiers in Psychology, 10, 2020.

마.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2014년 최초로 영 케어러에 대한 조사³⁰⁾를 실시하였다. 15세 청소년 2,42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조사대상의 7% 가량이 과도한 수준의 가족 돌봄과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한부모(어머니)와 지내는 가정이 많았으며, 부모의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청소년의 12%는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돈을 벌고 있다고 말하였고, 3%의 청소년은 돌봐야 할 가족으로 인해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학교에 가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바. 오스트리아

10~14세 청소년의 4.5%가 영 케어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 케어러의 평균 연령은 12.5 세였으며 영 케어러의 69.8%가 여성청소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 케어러가 어머니를 돌보는 경우는 23%, 아버지를 돌보는 경우는 14%, 조모를 돌보는 경우는 22%였으며 형제를 돌보는 영 케어러는 12%였다. 23%의 영 케어러가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은 물론, 가사일과 형제 돌보기의 삼중 부담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4%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하루 5시간 이상을 사용한다고 답변하였다. 31)

³⁰⁾ Nordenfors, Monica and Charlotte Melander, Young Carers in Sweden: A Short Review, 2017.

³¹⁾ Federal Ministry Republic of Austria, Children and Adolescents as Informal Caregivers: An Inside look into the past and

Ⅲ. 해외 영 케어러 지원 제도

해외 영 케어러 지원 제도의 핵심은 영 케어러가 청소년 본연의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돌봄과 보살핌을 받으며 충분한 성장과 발달의 기회를 갖는 것, 세상에 나아가 자립할 수 있기 위해 교육·훈련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 심리적·정서적 안정, 신체적 안전 속에서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 지원의 원칙이자 핵심이다. 이런 점에서 아동·청소년을 단지 자녀라는 이유로 부모의 부속물로 보는 시각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영 케어러 발굴 및 평가

가. 영국의 수요평가 제도

영국의 「아동 및 가족법」(The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 Sec 96(12)는 지방정부가 반드시 지역 내 영 케어러의 현황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영 케어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야 한다. 이에 법률 Sec 96은 영 케어러에게 필요한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Young Carer's Needs Assessment를 지방정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320 평가 목적은 개인의 필요를 파악하여,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한, 평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부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고자 한다. 330 이 때 아동·청소년에게 적절하지 않은 돌봄서비스란, 목욕시키기 용변처리하기, 이동시키기와 같이 상당한 물리력을 필요로 하는 일, 가족 생계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일, 과도한 정서적 돌봄을 제공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개인별평가 결과에 따라 영 케어러가 돌보고 있는 돌봄대상자(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주거나, 그 외 영 케어러의 돌봄시간을 단축해 주기 위한 지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나. 아일랜드의 케어러 웰빙리뷰(Carer Well-being Review)

아일랜드에서는 케어러 웰빙리뷰를 통해 영 케어러에 대한 7가지 평가를 실시한다. 34) 영 케

present situation of young carers in Austria, 2020.

³²⁾ UK Legislation,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최종 검색일: Feb. 11, 2022),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4/6/section/96/enacted〉

³³⁾ The Children's Society et al., Young Carers' Needs Assessment, 2018, p.6.

³⁴⁾ Family Carers Ireland, *Carer Well-being Review*(최종 검색일: Feb. 11, 2022), 〈https://www.familycarers.ie/carer-supports/your-carer-support-manager〉

어러의 돌봄역할, 자신을 위한 시간, 가정생활, 경제적 어려움, 평소 감정, 건강, 학업 또는 근로 상황을 파악한다. 영 케어러를 직접 면담한 지원 매니저(young carer support manager)가 평가 결과에 기반해 영 케어러와 함께 앞으로의 가족 돌봄 계획을 수립한다. 동시에 영 케어러의 전반적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개별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지원서비스를 연계하여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청소년이 자신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 청소년 개인의 시간과 기회를 온전히 희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지원기관

가. 영국의 Carers Trust

Carers Trust는 가족 및 친구 등을 돌보고 있는 무보수 간병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대표 기관이다. 간병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한다. 영국 전역의 협력기관 결연체인 The Carers Trust Network를 조직하여 영국 내 간병인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 유관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영 케어리를 위해서는 전문화된 서비스(specialised service)를 제공한다. 영 케어리에 대한 1:1 지원을 포함, 다양한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고, 정서지원, 건강과 안전, 복지와 생활기술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영 케어리와 그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대한 안내,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35)

나. 아일랜드의 Family Carers Ireland Center

아일랜드 전역에는 15개의 Family Carers Center가 있고 4개의 현장활동 지원센터 (Outreach Centers)가 운영 중에 있다. 36)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간병인 지원 매니저(Carer Support Manager)는 간병인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간병인과 그 가족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찾아내고 이를 안내 및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전화, 온라인, 대면 등의 방법을 통해 매니저와 소통할 수 있고, 매니저는 개인·가족별 여건에 따라 상담, 가정방문서비스, 간병서비스, 주간보호시설 등을 연계하고 지원한다. 37)

³⁵⁾ Carers Trust, About young carers(최종 검색일: Feb. 10, 2022), (https://carers.org/about-caring/about-young-carers)

³⁶⁾ Family Carers Ireland, *Your Support Centre*(최종 검색일: Feb. 10, 2022), 〈https://familycarers.ie/find-us/your-support -centre〉

³⁷⁾ Family Carers Ireland, *Your Carer Supports Manager*(최종 검색일: Feb. 10, 2022), 〈https://familycarers.ie/carer-supports/your-carer-support-manager〉

3. 온라인 플랫폼

가. 영국의 The Children's Society

The Children's Society는 아동 보호·지원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이다. 자유롭고 평범하게 성장할 아동의 권리, 모든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도전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영 케어러를 지원하고 있다. 영 케어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영케어러가 고립되지 않도록 외부의 다양한 지원 체계를 안내하고 있다. 웹페이지에 접속한 영케어러들이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원 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영 케어러 뿐 아니라 학교 등 영 케어러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기관, 영 케어러들과 교류하는 이들에게 영 케어러의 실태를 알리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하고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 그림 4 | The Children's Society의 영 케어러 지원기관 검색 화면

나. 호주의 'Carer Gateway'와 'Young Carers Network'

호주 정부는 간병인을 위한 종합 포털 사이트인 'Carer Gateway'³⁸⁾ 운영을 통해 호주에서 활동하는 간병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호주 어느 곳에 거주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호주 정부와 협력하고 있는 지원센터 등을 통해 자조모임, 상담, 온라인 교육등을 제공한다.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 부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없게 될

³⁸⁾ Australian Government, Carer Gateway(최종 검색일: Feb. 10, 2022), 〈https://www.carergateway.gov.au/about〉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을 돌보는 간병인으로서 영 케어러는 'Carer Gateway'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Young Carers Network'³⁹⁾는 영 케어러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영 케어러 수당 등 영 케어러와 관련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법, 각 상황에 따른 행동 요령, 알아두면 좋을 유용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원 기관을 안내하여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다. 아일랜드의 'Family Carers Ireland'

아일랜드에서는 10~17세의 영 케어러가 6만 7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⁴⁰⁾ 온라인 플랫폼과 긴급 상담전화 운영을 통해 영 케어러를 지원하고 있다. ⁴¹⁾ 온라인 회원으로 등록하면, 영 케어러를 위한 다양한 정보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영 케어러들의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영 케어러 그룹(young carer groups)을 운영하고 있다. 영 케어러 간의소통과 연대의 창구를 마련하여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간 지지와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아일랜드에서는 '영 케어러 카드'를 발급해준다. 10~24세의 영 케어러라면 누구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도서구입, 온라인 강의, 여가시설 및 운동시설 등의이용 시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그림 5 | 아일랜드에서 영 케어러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증명카드

※ 자료: Family Carers Ireland, *young care's card*(최종 검색일: Feb. 14, 2022), 〈https://familycarers.ie/carer-supports/young-carers/young-carers-card〉

³⁹⁾ Young Carers Network, About us(최종 검색일: Feb. 10, 2022), 〈https://youngcarersnetwork.com.au/〉

⁴⁰⁾ Family Carers Ireland, *Caring by Numbers*(최종 검색일: Feb. 8, 2022), (https://familycarers.ie/family-caring-in-ireland/caring-by-numbers)

⁴¹⁾ Family Carers Ireland, Young Carers(최종 검색일: Feb. 11, 2022), 〈https://familycarers.ie/carer-supports/young-carers〉

라. 오스트리아의 '수퍼핸즈(Superhands)'

온라인 플랫폼 수퍼핸즈는 2012년부터 영 케어러를 위한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42) 오스트리아 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s)의 재정 지원 하에 The Austrian Johanniter Organisation이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가족의 보호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영 케어러에게 법률 상담, 질병 등 의료정보 제공, 일상운영, 응급상황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수퍼핸즈는 영 케어러가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느 곳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해주고 있다.

4. 수당 및 보조금 지원

가. 영국

영국에서는 만 16세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당 최소 35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간병인 수당(Carer Allowance)을 지급한다. 전일제 학생이 아니면서 주 소득이 £128(약20만 7천 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주급 £67.60(약 1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3) 간병인이면서 소득 지원(income support) 등 정부 지원(*4)을 받고 있다면, 간병인 프리미엄 제도의 적용을 받아 주당 £37.70(약 6만 1천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5)

스코틀랜드에서는 돌봄자 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한해 1년에 2차례 Carer's Allowance Supplement를 지급한다. 2021년 상반기에 £231.40(약 37만 5천 원), 하반기에 £462.80 (약 75만 원)이 지급되었다.⁴⁶⁾ 16~18세의 영 케어러에게는 1년에 1번 'Young Carer Grant' £308.15(약 42만 원)를 별도로 지급한다.⁴⁷⁾

나. 호주

호주의 Care Allowances는 영구적인 장애 또는 상당 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심각한 질병이 있거나, 고령인 자를 집에서 지속적으로 돌보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이다. 48) 돌봄으로

⁴²⁾ The Austrian Johanniter organisation, Superhands(최종 검색일: Jan. 19, 2022), (https://www.superhands.at/)

⁴³⁾ Government of UK, Carer's Allowance(최종 검색일: Feb. 10, 2022), 〈https://www.gov.uk/carers-allowance〉

⁴⁴⁾ 소득지원(income support), 카운실 세액공제(council tax support), 구직수당(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 주거지원 (housing benefit), 연금지원(pension credit), 통합수당(universal credit) 등이 해당된다.

⁴⁷⁾ Government of Scotland, About the grant(최종 검색일: Feb. 10, 2022), (https://www.mygov.scot/young-carer-grant)

⁴⁸⁾ Australian Government, Carer Allowance(최종 검색일: Feb. 10, 2022),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carer-allowance)

인해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 간병인을 위한 Carer Payment도 마련되어 있다. ⁴⁹⁾ 영 케어러도 이같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을 받는 전체 수혜자 중 영 케어러는 극소수에 해당하지만 점차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⁵⁰⁾

이와는 별도로 25세 미만의 영 케어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다음과 같다. 51)

첫째, 25세 미만의 전일제 학생 또는 견습생(Australian Apprentices)일 경우 청소년수당 (Youth Allowance)을 받을 수 있다. 18~24세의 전일제 학생, 16~24세의 전일제 견습생이 지원 대상이다. 18세 미만인 청소년으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주당 AUD 313.80(약 27만 원),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AUD 367.00(약 31만 5천 원)이다. 52)

둘째, 12~25세 영 케어러를 위한 학비보조 프로그램(The Young Carer Bursary Progra m)⁵³⁾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돌봄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청소년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5년 첫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2017년도 사업 평가⁵⁴⁾를 통해 보조금 지급이 학업 및 돌봄 지속, 사회적 유대감 증진, 일상적인 스트레스의 감소 등의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지원자의 신청에 따라 1인당 AUD 3,000(약 257만 원)를 지급하고 있다.

다.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Funded Family Care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배우자, 파트너, 18세 미만인 자는 수당지급 대상자에서 제외시켰었다. 그러나 가족간병인 지원 비정부기구인 Carers NZ 와 Carers Alliance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정부는 2020년 Funded Family Care 제도의 명칭을 Resident Family Care로 변경하고 지급 대상에 배우자 및 16~18세의 영 케어러를 포함시켰다. 55)

⁴⁹⁾ Australian Government, Carer Payment(최종 검색일: Feb.10, 2020).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carer-payment)

⁵⁰⁾ Bray J. Rob, *Young carers in receipt of Carer Payment and Carer Allowance 2001–06: Characteristics, experiences and post–care outcomes*, 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2013.

⁵²⁾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혼인상태, 혼인상태면서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영 케어러의 조건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서 본문에 기술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Australian Government, *How much you can get*(최종 검색일: Feb.10, 2020),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how-much-youth-allowance-for-students-and-apprentices-you -can-get?context=43916〉을 참조할 수 있다.

⁵³⁾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Young Carer Bursary Program*(최종 검색일: Feb. 10, 2022), 〈https://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disability-and-carers/programmes-services/for-carers/young-carer-bursary-program#:~:text=The%20Young%20Carer%20Bursary%20Program,being%20delivered%20by%20Carers%20Australia〉

⁵⁴⁾ Inside Policy, An Evaluation of the Young Carer Bursary Program: Final Report, 2017.

⁵⁵⁾ International Alliance of Carer Organization, Global State of Caring - New Zealand, 2021.

5. 학교와의 협력

가. 영국

영국 정부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교육기관이 영 케어러들을 빠르게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보건부, 교육부, Carers Trust, 그리고 The Children's Society는 영 케어러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교내 보건프로그램의 시행이 영 케어러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한다. 56) 학교에서 일정 시간을 보내는 영 케어러를 빠르게 식별하고 필요한 지원을 직접 지원하거나 기관에 연계하는 것이 영 케어러의 정신건강과 일상의 안녕(well-being)을 보장하는 효율적 방안이라 보는 것이다. 한편, 민간단체인 Cares Trust와 The Children's Society는 학교에서 영 케어러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였다. 57) 가이드북은 영 케어러를 식별, 평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 케어러 인식 개선 교육의 시행, 영 케어러 및 가족에 대한 평가 및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만일 교내에 적절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할 여건이라면 가까운 지원기관에 연락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나. 호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교육부(NSW Department of Education)에서는 각 학교에 영 케어러 지원 및 보호 관련 지침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⁵⁸⁾ 지침서에는 영 케어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교직원 등의 인식개선 필요성,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 영 케어러 지원을 위해 연계할 수 있는 외부 기관에 대한 안내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다.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Family Carers Ireland는 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Young Carers in School Programme)을 통해 영 케어러에 대한 교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교내 인식개선 토론 및 교내 영 케어러 그룹 설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⁵⁹⁾

⁵⁶⁾ Department of Health, Department for Education, Carers Trust, and The Children's Society, Supporting the health and wellbeing of young carers(최종 검색일: Jan. 30, 2022),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99270/Young_Carers_pathway_Interactive_FINAL.pdf

⁵⁷⁾ Carers Trust and The Children's Society, *Supporting Young Carers in Schools: A Step-by-step Guide for Leaders, Teachers and Non-teaching Staff*, 2017.

⁵⁸⁾ NSW Department of Education, Being a Carer, Being a Student and Being a Kid: A resource for schools, 2020.

⁵⁹⁾ Family Carer's Ireland, *Young Carer Projects*(최종 검색일: Feb. 24, 2022), 〈https://familycarers.ie/carer-supports/young-carers/young-carer-projects〉

IV. 시사점 및 과제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영 케어러에 대한 관련 법률 및 제도, 그리고 현황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돌봄서비스 정책 대상자로 인식하고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이들이 돌봄주체가 되어 가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실은 간과되어 온 것이다.

다만, 관련 자료에서 우리나라 영 케어러의 일면을 제한적이나마 엿볼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아동 평일 주요 활동시간을 조사하는 항목 중 '집안일 돕기'가 있는데, 여기에 가족 돌봄 내용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9~1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집안일 돕기'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하루 1시간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78.4%, 1~3시간 미만은 18.0%, 3시간 이상은 3.5%로 조사되었다. ⁶⁰⁾

또한, 2021학년도⁶¹⁾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 3만 2,027명 중 1만 9,189명이 장기결석, 기타 및 가사의 사유로 유예·면제·자퇴하였는데 이들 중 가족 돌봄이 사유가 된 청소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학업중단 사유를 좀 더 세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⁶²⁾

그러나 보다 정확한 영 케어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국과 같은 별도의 전국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실태조사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외 입법례를 살펴볼 때, 영 케어러의 지원 목적은 이들이 또래 청소년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발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케어러 지원은 '청소년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해당 사안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의2⁶³⁾는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규칙」제1조의2제1항제4호⁶⁴⁾에 따라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⁶⁰⁾ 류정희 외,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p.325.

^{61) 2020.03.01.~2021.2.28.}일의 기간을 말한다.

⁶²⁾ 교육통계서비스, 「2021학년도 학급별 학업중단현황」, 2021.

⁶³⁾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 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 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⁶⁴⁾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법률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조사는 일반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조사로 '가족돌봄청소년' 또는 '청년간병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에 별도의 호를 신설하여 '간병청소년' 또는 '가족돌봄청소년'을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별도의 장 또는 조를 통해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 '가족돌봄청소년' 또는 '간병청소년' 지원을 제5장의 3에 신설하여 이들에 대한실태조사 및 지원서비스를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의지원대상이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 이하의 청소년이지만, 미성년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정책도 필요하다. 다만, '가족돌봄청소년'으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논의가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보육원 퇴소 청소년 등 가족이 없는 청소년 간 간병이 있을 수도있는데, 지원대상을 가족으로 한정하는 것은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영 케어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제도는 신청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가족 간병과 돌봄, 학업, 생계활동을 병행하는 가장 어려운 여건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자신과 환자에게 필요한 복지제도를 재빠르게 간파하고,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제도의 수혜를 누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영 케어러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따라서 '간병살인 사건'의 해당 청년이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음을 아쉬워하기보다는, 모바일 등에 쉽게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고, 전문 인력을통해 신속하게 지원 서비스에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의 온라인 플랫폼들은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을 대면하여 서비스에 직접 연계해 주는시스템을 마련해 놓았다. 영 케어러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영 케어러들이 한 번의 접촉 또는 한번의 접속을통해 보내는 구호 신호를 빠르게 수신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학교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잦은 결석, 과제 미제출, 불성실한 수업태도를 보이는 학생이라면,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동·청소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영 케어러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에서 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모든 학교에 적절한 교내 프로그램 도입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이들을 어느 곳에 연계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등을 담은 지침서를 제작·배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 지원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이들이 돌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본연의 학습 및 교우관계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청소년의 의식 및 가치관 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관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 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 생활 등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의 사회 · 문화 활동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넷째, 영 케어러를 중심으로 기존의 위기지원 제도 등을 일제히 점검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마련, 학교와의 연계는 모두 탄탄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병살인 사건 이후로, 장애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발급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비교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의 경우 사전완납 이후 사후정산의 방식으로 지원된다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다. '본인부담상한제도'⁶⁵⁾ 마련에 그칠 것이 아니라 비급여와 간병비를 포함해 환자는한 해 일정금액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식의 의료비 상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⁶⁶⁾ 영국, 호주, 뉴질랜드와 같이 영 케어러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영 케어러가 아르바이트로 생계비를 충당해가며 돌봄을 지속하는 방식은 학업중단의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영 케어러와 그 가족의 생애빈곤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 케어러의 증가는 가족해체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가 초래한 짙은 그늘의 한 단면 이다. 즐겁게 생활하고 공부하며, 성장하고 발전해야 할 아동·청소년이 성인도 감내하기 어려운 간병일을 전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의 권리 침해 문제이다. 또한, 장애 및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가족에 대한 돌봄이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된다면, 이는 미래를 준비해야할 기회가 제한되고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오랜 간병과 돌봄, 정신적 스트레스, 현실의 압도감 역시 영 케어러를 신체적·정서적으로 병들게 한다는 점에서 영 케어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결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이를 방관했을 시 미래 사회가 감당해야할 비용과 수고 역시 크지 않을 수 없다. 이미 24개 국가에서는 영 케어러 지원을 위한 사회적 환기및 제도 마련 단계에 진입하였고, 상당한 수준의 데이터가 축적된 국가도 있다. 이들의 경험과도전을 숙지해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서둘러야할 것이다.

⁶⁵⁾ 의료비에 대한 과도한 가계 부담을 덜고자 마련된 제도로 본인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 액수를 넘는 비용을 지불한 경우 초과금액을 환불해 주는 제도이나 비급여나 선별 급여, 전액 본인부담 등은 제외된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본인부담상한제를 알고, 진료비 걱정 줄었다」 (최종 검색일: 2022.2.14.),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92203)

⁶⁶⁾ 강지헌, 「'강도영 비극', 국가는 '간병 살인' 책임 없나」(최종 검색일: 2022.2.14.), 『프레시안』, 2021.11.19.,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070〉

참고문헌

- * 강지헌, 「'강도영 비극', 국가는 '간병 살인' 책임 없나」(최종 검색일: 2022.2.14.), 『프레시안』, 2021.11.19.,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070
- * 교육통계서비스, 「2021학년도 학급별 학업중단현황」, 2021.
-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본인부담상한제를 알고, 진료비 걱정 줄었다」(최종 검색일: 2022.2.14.),
 -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ld=148892203
- * 류정희 외,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 백경열, 「22세 청년의 '간병살인' 비극...우리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최종 검색일: 2022.2.13.), 『경향신문』, 2021.11.09.,
 - https://m.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111091758001#c2b
- * 통계청,「인구총조사-연령 및 성별 인구」(최종 검색일: 2022.2.8.)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ld=101&tblld=DT_1IN1503 &conn_path=I3〉

- * Australian Government, *Carer Payment*(최종 검색일: Feb.10, 2020).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carer-payment〉
-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Young Carer Bursary Program(최종 검색일: Feb. 10, 2022), (https://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disability-and-carers/programmes-services/for-carers/young-carer-bursary-program)
- * Australian Government, *Getting a payment*(최종 검색일: Feb.10, 2020),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getting-payment-if-youre-car er?context=60097〉
- * Australian Government, *How much you can get*(최종 검색일: Feb.10, 2020),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how-much-youth-allowance-for-students-and-apprentices-you-can-get?context=43916〉
- * Bray J. Rob, *Young carers in receipt of Carer Payment and Carer Allowance 2001–06: Characteristics, experiences and post–care outcomes*, 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 Indigenous Affairs, 2013.
- * Carers NSW Australia, 2020 National Carer Survey: Young Carers, 2020.
- * Carers Trust and The Children's Society, Supporting Young Carers in Schools: A Step-by-step Guide for Leaders, Teachers and Non-teaching Staff, 2017.
- * Carers Trust, *About Young Adult Carers*(최종 검색일: Feb. 12, 2022), 〈https://carers.org/about-caring/about-young-adult-carers〉
- * Carers Trust, *About young carer*s(최종 검색일: Feb. 10, 2022), 〈https://carers.org/about-caring/about-young-carers〉
- * Carers Trust, *Protecting Young Carers from Bullying: A Guide for Schools, Community Groups and Policy Makers*, 2016.
- * Cares Australia, *Young Carers*(최종 검색일: Feb. 8, 2022), 〈https://www.carersaustralia.com.au/about-carers/young-carers/〉
- * Department of Health, Department for Education, Carers Trust, and The Children's Society, Supporting the health and wellbeing of young carers(최종 검색일: Jan. 30, 2022),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 m/uploads/attachment_data/file/299270/Young_Carers_pathway_Interactive FINAL.pdf)

- * Family Carers Ireland, *Carer Well-being Review*(최종 검색일: Feb. 11, 2022),〈https://www.familycarers.ie/carer-supports/your-carer-support-manager〉
- * Family Carers Ireland, *Your Carer Supports Manager*(최종 검색일: Feb. 10, 2022),
 - \https://familycarers.ie/carer-supports/your-carer-support-manager>
- * Family Carers Ireland, Your Support Centre(최종 검색일: Feb. 10, 2022),

- \https://familycarers.ie/find-us/your-support-centre>
- * Family Carers Ireland, *Young Carers*(최종 검색일: Feb. 11, 2022), 〈https://familycarers.ie/carer-supports/young-carers〉
- * Federal Ministry Republic of Austria, *Children and Adolescents as Informal Caregivers: An Inside look into the past and present situation of young carers in Austria*, 2020.
- * Foley, Niamh et al., Informal Carers, House of Commons Library, 2021.
- * Government of Scotland, *Carer's Allowance Supplement Overview*(최종 검색일: Feb. 10, 2022), 〈https://www.mygov.scot/carers-allowance-supplement〉
- * Haugland, Bents, et al., "The Burden of Care: A National Survey on the Prevalenc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Health Problems Among Young Adult Carrers Attending Higher Education in Norway", Frontiers in Psychology, 10, 2020.
- * Inside Policy, *An Evaluation of the Young Carer Bursary Program: Final Report*, 2017.
- * International Alliance of Carer Organization, *Global State of Caring New Zealand*, 2021.
- * Joseph, Stephen et al., "Young Carers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An Overview and Critical Perspective on Possible Future Directions", *Adolescent Research Review*, 5, 2020.
- * Kaiser, S., & Schulze, G. C., "Between inclusion and participation: Young carers who are absent from school", *Journal of Cognitive Education and Psychology*, 14(3), 2015.
- * Leu, Agnes et al., "The 2021 cross-national and comparative classification of in-country awareness and policy responses of 'young carers'", *Journal of Youth Studies*, 2022,
- *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Meeting the Health and Wellbeing Needs of Young Carers, 2018.

- * Nordenfors, Monica and Charlotte Melander, *Young Carers in Sweden:*A Short Review, 2017.
- * NSW Department of Education, *Being a Carer, Being a Student and Being a Kid: A resource for schools*, 2020.
- * Saul Becker et al., 'Young carers in the UK: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Research, *Policy and Planning*, 8(2), 2000.
- * Sempik, and Becker, *Young adult carers at College and University*. London: Carers Trust, 2014.
- * Sempik, and Becker, *Young adult carers at school: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caring and education*, London: Carers Trust, 2013.
- * Stamatopoulos, Vivian, "The young carer penalty: Exploring the costs of caregiving among a sample of Canadian youth", *Child & Youth Services*, 39(2–3), 2018.
- * The Austrian Johanniter organisation, *Superhands*(최종 검색일: Jan. 19, 2022), 〈https://www.superhands.at/〉
- * The Children's Soceity, *Supporting young carers*(최종 검색일: Feb. 14, 2022), 〈https://www.childrenssociety.org.uk/what-we-do/our-work /supporting-young-carers〉
- * The Children's Society et al., Young Carers' Needs Assessment, 2018.
- * The Children's Society, Supporting Young Carers and Their Families:

 An Introductory guide for professionals, 2016.
- * The Money Advice Service, Financial Support for Young Carer(최종 검색일: Feb. 10, 2022), 〈https://www.moneyadviceservice.org.uk/en/articles/financial-support-for-young-carers#what-kind-of-financial-support-is-available-for-young-carers〉
- * UK Legislation,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최종 검색일: Feb. 11, 2022),
 -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4/6/section/96/enacted
- * Wayman, Sheila, *The vital role young carers play on the 'forgotten front line'*(최종 검색일: Feb. 8, 2022), The Irish Times(2021.11.30.), https://www.irishtimes.com/life-and-style/health-family/parenting/the-vital-role-young-carers-play-on-the-forgotten-front-line-1.4735381)

R E P O R T · L I S T

NARS 현안분석 발간 일람

	제목	발간일	집필진
제241호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이행 강화 방안: 가해자 GPS 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	2022.1.28.	허민숙
제240호	도심지 지반침하의 원인과 대책	2022.1.13.	김진수
제239호	영국과 일본의 법안사전심사제 현황과 시사점	2021.12.31.	최정인 김유정
제238호	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감정) 개선과제	2021.12.31.	박재영
제237호	디지털 시대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	2021.12.31.	최정민
제236호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쟁점 및 과제 ① -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개관	2021.12.31.	김도희
제235호	민간자격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2021.12.30.	조인식
제234호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활동과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의 시사점	2021.12.30.	임재범
제233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2021.12.30.	한경석 한인상
제232호	과학기술분야 계획조정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2021.12.29.	권성훈 김나정
제231호	성평등 추진체계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2021.12.28.	전윤정
제230호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분석	2021.12.23.	김도희
제229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2021.12.22.	류영아
제228호	형사사법 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과제	2021.12.21.	김광현
제227호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례 및 시사점	2021.12.15.	이재영
제226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2021.12.13.	문심명
제225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2021.12.10.	하혜영

호수	제목	발간일	집필진
제224호	유럽 차별금지법제와 시사점	2021.11.24.	김선화
제223호	유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	2021.11.18.	허민숙
제222호	아동 등 생애주기 단계별 정책대상 연령정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21.11.17.	박선권
제221호	해외주요국의 위드코로나(With Corona) 시행 전후의 양태와 한국에의 시사점	2021.11.16.	박상윤
제220호	소년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 논의와 새로운 방향	2021.11.10.	김진태
제219호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소방안전 강화방안	2021.11.8.	배재현 김예성
제218호	물가 상방 리스크 요인의 주요 내용 및 쟁점	2021.11.3.	황인욱
제217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2021.11.2.	박진우
제216호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2021.11.1.	김강산
제215호	육아 패널티의 현실,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	2021.10.29.	허민숙
제214호	주요국의 재난지원금 지급사례와 분석	2021.10.26.	김준헌 박인환
제213호	일수벌금제(日收罰金制)의 현황 및 쟁점사항	2021.10.22.	박혜림
제212호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21.10.19.	김광현
제211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배제에 관한 입법 쟁점	2021.10.5.	김성호
제210호	농업 부문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 및 향후 과제	2021.10.1.	김규호 유재국 장영주
제209호	가상자산 강제집행 논의의 현황과 시사점	2021.9.30.	류호연
제208호	경제위기 시 산업구조개혁 정책의 경과와 시사점	2021.9.17.	전은경
제207호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2021.8.26.	박인환

호수	제목	발간일	집필진
제206호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망	2021.8.5.	이승현 이승열 김도희
제205호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2021.7.6.	김광현
제204호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 현황과 정책 및 입법과제	2021.6.29.	조인식
제203호	ABC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21.6.22.	김여라
제202호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입법·정책과제 -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개선을 중심으로	2021.6.4.	이수환
제201호	COVID-19 피해기업 손실보상을 위한 프랑스 연대기금 사례와 시사점	2021.5.20.	박충렬
제200호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지원제도 및 개선방향	2021.5.11.	박진우 허민숙
제199호	바이든 시기 미·일 관계 주요 현안과 시사점	2021.5.3.	김도희 박명희 정민정
제198호	농업환경자원 정보관리 현황과 개선과제	2021.4.30.	장영주 김경민 편지은
제197호	미성년 상속인 보호 입법 방안 - 상속재산 초과 채무의 승계 방지	2021.4.29.	김성호
제196호	가향(加香)담배에 대한 해외 규제 사례 및 시사점	2021.4.28.	문심명
제195호	벤처기업 차등(복수)의결권주식 도입, 쟁점과 과제는? - ③ 주요쟁점별 입법·정책방안 제언 2 -	2021.4.16.	박재영
제194호	10대 청소년미혼모 고립 해소: 가정방문서비스 전면도입을 위한 과제	2021.4.15.	허민숙



NARS 현안분석 제242호

해외 영 케어러(young carer) 지원 제도와 시사점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및 고립 예방을 위한 과제





